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353

제출년월일 : 2017. 0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편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0,74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24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194백만원이 증액된 466,762백만원, 특별회계는 1,046백만원이 증액되어 43,987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1,343백만원, 세외수입 2,132백만원, 지방교부세 22,885백만원, 조정교부금 39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8,05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9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6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0백만원 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2,371백만원, 재무활동 3,40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16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984백만원, 재무활동 62백만원 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